



# 어선매매계약서(매도인용)

매도인( )과 매수인( )은 아래와 같이 어선매매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 계약의 목적물과 매매대금 】 본 계약의 목적물과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.

목적물 표시	물건(√)	어선.□ / 어선설비□(기관□, 통신장비 □, 어로설비 □) / 어구 □			
	어선명칭	어업허가		총톤수 (허가톤수)	톤
		허가관청			
	어선번호	선질		추진기관(PS) 및 대수	
선 적 항	진수일자				
매매대금	총계대금	일금	원정		
	계약금	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.			(인)
	중도금	원은 20 . . . 매도인에게 지불하고,			
	잔액금	원은 20 . . . 까지 지불하기로 함.			
중개수수료	수수료	%	원		

## 제 2 조 【 목적물의 인도 등 】

-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, 소유권이전등록(등기) 및 어업허가, 지위승계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록(등기)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20 . . . 이전에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제1항 기재 의무를 20 . . . 에 이행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【 제한물권 등의 소멸 】

매도인은 위 목적물에 설정된 지당권,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,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. 다만,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 4 조 【 지방세 등 】

위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,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제 5 조 【 계약의 해제 】

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)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## 제 6 조 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】

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게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【 중개수수료 】

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,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·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. 공동 중개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.

## 제 8 조 【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설명 】

중개업자는 매도·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, 매도·매수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서(확인서)를 중개업자에게 교부 요청할 수 있다.

## 【특약사항】

- ▶ 권리의 이전의 내용
- ▶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
- ▶ 중개수수료·경비 등의 반환
- ▶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- ▶ 거래대상물의 확인한 사항
- ▶ 그 밖의 약정내용

20 년 월 일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,

3통을 작성 각각 서명·날인하여 어선중개업자 · 매도인 ·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매도인	주민등록번호		전화		성명		서명 또는 날인(인)
	주소						
매수인	주민등록번호		전화		성명		서명 또는 날인(인)
	주소						
중개업자	사무소 상호		전화		성명		서명 또는 날인(인)
	사무소 소재지		어선중개업				

